

국내외 민영화 사례와 경쟁정책적 시사점



조 성 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나라 경쟁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산업정책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부당국의 집행력도 강력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문제점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빅딜정책, 대기업정책과 민영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적 배려보다는 그 기업이 처해있는 경쟁환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풍토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경쟁환경의 조성은 해외 민영화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시사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현 정부는 출범이래 강력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였던 대표적인 공기업 11개 중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포항제철, 대한송유관, 종합화학,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 등 7개에 대한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가 현재 추진중이다. 이 중 담배인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다음 정부에서 매듭이 지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행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의 추진방법에 대하여 많은 제언과 의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

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해당사자 집단의 심한 반대와 이들과 동조하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영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 중에서 해외매각, 헐값매각,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주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의 주요 공익산업을 담당하고 있거나 은행, 담배·인삼, 철강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오히려 제대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쟁정책적인 관점이다. 포

항제철을 제외하고 민영화되었거나 추진중인 대부분의 공기업이 국내시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영화를 전후하여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경쟁정책적 고려는 민영화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정책적 논의가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민영화가 금융 및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단기적 개혁과제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금융 및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 기업, 노동, 금융 등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하였고 이 중 민영화는 공공부문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민영화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그 추진과정도 밀어부치기식 성과주의로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같은 강력한 추진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어느 행정부에서도 이룩할 수 없었던 민영화 성과를 기록한 것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경쟁정책적인 고려는 외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정책¹⁾에서도 경쟁정책은 매우 등한시되었다. 대기업에 대한 빅딜정책은 여러 대기업이 추진하던 사업을 한 두개의 기업에게만 몰아줌으로써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 그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주요 핵심산업의 독과점도는 높아지고 경쟁환경은 악화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위기와 불경기하에서는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확보가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며

경쟁정책은 비교적 사소한 이슈로 비추어졌다. 이러한 인식이 민영화 정책에도 어느 정도 파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영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하게 검토된 것은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매각방법에 있었고 얼마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경쟁정책의 위상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 경쟁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과 산업정책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부당국의 집행력도 강력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문제점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빅딜정책, 대기업정책과 민영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적 배려보다는 그 기업이 처해있는 경쟁환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풍토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경쟁환경의 조성은 해외 민영화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시사되어야 할 것이다.

II. 해외 민영화 사례와 경쟁정책적 시사점

1. 해외 민영화 사례

가. 영국의 전력산업

영국은 1990년 England와 Wales 지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전력산업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고압선을 통하여 발전된 전력을 수요처로 공급하는 송전, 변전소를

1) 정부는 반도체, 선박엔진, 항공산업, 발전설비, 철도차량, 석유화학, 정유 등 7개 부문의 빅딜정책을 통하여 대기업간 업종교환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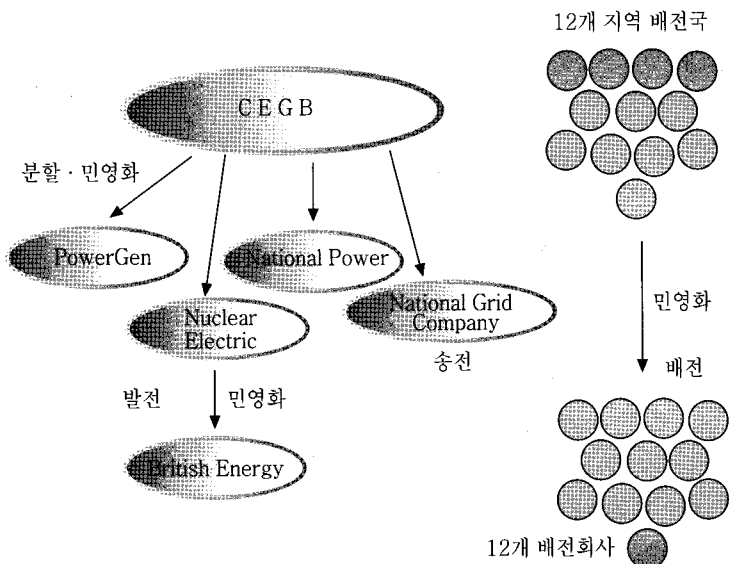
거친 저압선을 통하여 일정 지역에 전력을 배급하는 배전 그리고 판매 등으로 그 역할을 세분할 수 있는데 당시 영국의 England와 Wales 지역에서는 발전과 송전을 CEGB(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가 맡았었고 배전은 지역적으로 12개의 지역배전국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CEGB는 발전부문에서 National Power, PowerGen 그리고 Nuclear Electric 등의 3개의 회사로 분리되었다. 이 중 National Power와 PowerGen은 구조개편이 있었던 1990년 다음해인 1991년 3월에 주식 60%가 매각되어 민영화가 개시되었으며 1995년 3월에 나머지 주식 40%를 매각하여 민영화를 완성하였다. 한편, 원자력발전소로 이루어진 Nuclear Electric사는 1996년 7월에 주식을 100% 매각하였고 그 이름을 British Energy로 바꾸었다.

한편 1990년에 배전부문은 12개의 배전회사 주식을 100% 매각하면서 민영화되었다. 송전부문은 CEGB로부터 National Grid Company란 이름으로 독립되었으며 12개 배전회사가 그 지분을 조금씩 나누어 가졌다.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공모주를 일반대중에게 매각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주주도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정부에게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였다. 거래비용이 크고 매각가치도 크지 않은 공모주방식을 영국정부가 선택하였던 것은 일반국민과 종업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황금주를 통해서 외국자본에 발전부문의 인수를 허용한다는 비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모주방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에서 가장 발

[그림 1 :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달된 런던의 증권시장이 있었고 여기서 충분히 매각물량을 소화할만한 능력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주식매각을 통하여 발전과 배전부분의 분할구도가 그대로 이어졌다. 즉, 경쟁구도가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의 특징이다. 특히 발전부문에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3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였고 중소 발전소와 해외발전소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전부문에서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 같은 경쟁구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된 양대 발전회사인 National Power와 PowerGen 사이에 암묵적 담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실질 전기 요금은 민영화 이후에 하락하였으나 발전회사간의 담합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발전부문이 단지 2개의 수화력 발전회사와 1개의 원자력회사로만 분할되어 경쟁자가 충분히 많지 않았고 시장집중도가 너무 높아서 이 같은 암묵적 담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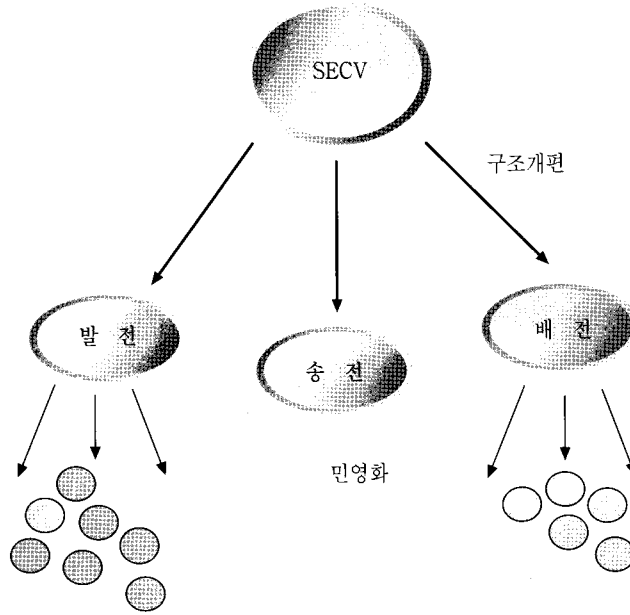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면서 경쟁도입이 가능한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구분하였다. 당시에 등장하였던 IT기술에 힘입어 경쟁입찰에 기초한 급전(dispatch)기능 확립과 시간대별 전력가격의 결정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하여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될 수 있었다. 또한 배전의 경우 지역적인 독점성이 나타나긴 하였으나 여러 사업자간의 간접적인 경쟁을 통한 잣대 경쟁(yardstick competition)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밖에 전력의 판매부문은 전력소매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배전부문과 분리되어 경쟁적인 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나. 호주 빅토리아주의 전력산업 민영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1993년까지 수직통합된 SECV(State Electricity Commission of Victoria)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다. 영국과는 달리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분리시켜 진행하였다. 즉, [그림 2]에서 보듯이 먼저 SECV를 발전회사와 송전회사, 배전회사로 분리하고 이를 공사화(corporatization)하여 전력시장을 운용하였다. 다음으로 발전회사인 Generation Victoria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를 5개의 발전회사로 다시 분할하였고, 매각되지 않은 2개의 발전설비는 주정부가 소유하였다. 마찬가지로 배전부문도 5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매각하였고 송전부문은 하나의 기업으로 민영화하였다.

빅토리아주는 발전부문을 5개 회사로 분할함으로써 영국과는 달리 충분한 경쟁구도를 유지하였다. 이는 영국의 발전부문 시장집중도가 너무 높았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호주 빅토리아주는 우선 전력산업을 발전, 송전, 배전부문으로만 크게 분할하였고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발전부문의 경우 주식매각이 아닌 발전설비별 자산매각을 실시하여 5개의 민간 발전회사가 탄생하였고 2개의 발전소는 여전히 공영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배전부문도 5개의 배전회사로 분할되어 민영화되었다. 이처럼 호주 빅토리아주 전력산업의 민영화의 특징은 민영화를 통해서 경쟁구도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즉, 구조개편을 먼저 실시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쟁구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 호주 빅토리아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2. 경쟁정책적 시사점

해외 민영화 사례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공기업을 민영화 할 때 해당 산업에 충분한 경쟁여건이 마련되도록 힘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평적으로 적절한 시장점유율을 갖도록 민영화 대상기업을 분할하였으며 다른 이유로 인하여 분할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에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시장거래의 배타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직적인 기업간 합병도 제한하였다.

가. 수평적인 경쟁여건의 확보

해외 민영화 사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영화가 항상 산업의 구조개편 및 경쟁도입과 동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수평적으로

산업을 분할하여 몇 개의 기업으로 나누었다. 이는 공기업이 네트워크산업이거나 또는 상당한 독점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과 호주 빅토리아주의 전력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전부문의 분할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독점적 시장구조 자체가 사업자의 독점적 행동을 유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신의 생산량을 줄이고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preventive measure)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단독으로는 반경쟁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

어느 수준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가 일정 지역에 국한될 때에는 지역적인 독점권을 갖는 여러 기업으로 분할하였다. 비록 동

일한 시장에서 두 기업이 경쟁할 수는 없으나 지역독점권을 갖는 여러 기업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잣대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영국과 호주 빅토리아주의 배전부문 분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평적 분할을 위한 검토기준으로 는 규모의 경제 존재여부,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 교역재 여부, 국제경쟁 여부 등이 있다. 규모의 경제가 크고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분할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역재이고 국제경쟁에 직면하는 정도가 클수록 기업분할의 필요성은 낮아지게 된다.

나. 수직적 결합 및 출처의 제한

해외의 민영화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여건의 확보는 수평적 경쟁구도의 마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수직적인 결합에 있어서도 경쟁이 위해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전력, 가스, 통신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급되는 산업에서 수직적인 결합이나 합작을 특별히 경계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의 건설과 관리가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보이게 되어 전국적 또는 지역적 독점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를 매개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류 및 하류의 사업자들은 배타성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의 경우 발전회사가 배전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려 하는 경우 전문규제기관인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 예로 민영화된 발전회사 중의 하나인 PowerGen이 배전회사

중 하나를 인수하려 하였을 때 OFGEM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PowerGen이 보유한 발전설비를 일부 매각하여 수평적 시장지배력을 완화하자 배전회사의 인수를 허용하였다. 이는 수평적 시장지배력이 수직적인 합병에 의하여 강화되고 시장에서 다른 발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타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조치라고 이해된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전력사업자간 수평적 결합에 대한 규제 외에 다른 유형의 전력사업자간 수직적인 합병이나 출자 및 지분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다.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규제

자연독점적인 성격이 강하여 여전히 지역적 또는 전국적 독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부문에 대해서 정부는 그 사업자의 공급대상인 포획소비자(captured customers)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및 진입을 규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규제에 임하여야 한다. 공기업을 통한 이른바 자율적 규제(self-regulation)에서 민간에 대한 공익산업 규제의 필요성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므로 공익산업을 민영화 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문규제기관을 설립하였다. 이 경우 전통적인 반독점,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규제기관과 공익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적 규제기관사이에 적절한 역할 및 규제관할권의 분담이 필요하다.²⁾

2) 일례로 호주의 공정거래 규제기관인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er)와 전력시장의 감시·감독 및 조사기관인 NECA(National Electricity Code Administrator)는 서로의 역할분담을 위하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자연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중에서 가격에 대한 규제가 특히 중요하다. 과거 가격규제는 전통적인 투자보수율(rate of return) 규제방식에 따랐으나 영국에서는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의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분 중의 일부를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RPI - X 식의 가격상한(price-cap) 규제가 적용되었다.

라. 교차보조 제한(ring-fencing)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가 공기업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자연독점산업을 인수할 때 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연독점산업과 다른 사업간에 교차보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해외 민영화 사례에서 살펴 볼 수 있다.³⁾ 진입규제가 없고 경쟁이 자유로운 사업간에 교차보조가 일어나는 것은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규제할 바가 아니다.⁴⁾ 다만, 포획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산업에서 계열사를 보조하는 것은 규제산업의 소비자를 희생시켜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셈이므로 금지하고 있다.

III. 우리 나라 민영화 사례에서 경쟁정책적 개 선사항

1.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민영화

가. 민영화 현황

우리 나라는 민영화를 단행하기 위해서 먼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2001년 4월 한전으로부터 6개의 발전회사가 분할되었다. 이 중 한 개는 수력과 원자력발전소로 구성된 한국수력원자력(주)이고 나머지 5개는 화력발전소와 양수발전소를 포함한 남동발전(주), 동서발전(주), 서부발전(주), 남부발전(주), 중부발전(주) 등이다. 여기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발전회사가 민영화 대상이다. 2002년 내에 이 중 1개의 발전회사에 대한 민영화가 시작될 것이고 2005년 이전까지 2개의 발전회사가 민영화 될 것이고 그 이후 나머지 3개의 발전회사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다.

전력산업의 경쟁구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배전부문도 한전에서 분할되어 민영화될 것이어서 한전은 장기적으로 송전회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에서는 경쟁도입의 정도가 점차 강화될 것이다. 현재 전력산업은 배전부문 분할 이전에도 발전부문에서 경쟁을 실시하고 있다. 곧 이어 배전부문이 분할되면 도매경쟁단계로 돌입하고 판매사업에 대한 지역독점권이 사라지게 되면 본격적인 소매경쟁단계로 진입하게 될

3) Ring-Fencing in the Electricity and Gas Industries Issues Paper, Office of the Regulator-General, Victoria, July 2000.

4)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계열사간의 거래와 지원을 부당내부거래 및 부당지원행위라 하여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 사업환경하에서의 거래 및 지원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달성하는 수단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일 수 있으므로 규제의 정당성은 없다.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희생시켜 수익을 빼돌린다는 이른바 tunneling은 상품시장의 경쟁정책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자본시장의 규율메커니즘에서 감독되어야 할 사안이다.

것이다.

나. 개선사항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에 비하여 전력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서 경쟁구도를 구현하기 위한 산업구조개편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발전부문도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서 시장지배력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전력산업의 경쟁환경에서 갖는 위상은 여러 가지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수력발전소와 같이 부하추종능력이 큰 발전원이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기저부하용 발전설비와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전력입찰시장에서 가격조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전체 발전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발전량 기준으로 40%수준) 자체가 지나치게 커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영화 대상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송전회사가 소유하는 것은 불공정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수직적인 결합구조로 인식될 수 있다.

2. 우리 나라 가스산업의 민영화

가. 민영화 현황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사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현재 가스공사가 맡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부문은 가스공사로부터 분리하여 3개의 자회사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이 중 2개는 분할후 바로 민영화시키며 나머지 1개는 가스공사의 소유로 남겨두고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NG의 인수·저장

설비와 배관망은 모두 가스공사의 소유로 남겨둔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1차 공모를 실시하여 정부지분 7.8%와 신주 31%를 매각하였다. 가스공사는 현재 해외 메이저를 상대로 전략적 지분매각을 추진중이다.

나. 개선사항

가스공사가 도입회사 중 하나를 계속 소유하는 것은 다른 도입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인수 및 저장설비까지 가스공사가 소유하는 것은 수직적 거래당사자간의 불균등한 교섭력의 원인이 된다. 한편, 해외 메이저가 가스공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가스공사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매구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해외 민영화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민영화와 함께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서 산업구조의 개편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한 산업에 경쟁이 가능한 부문과 경쟁이 불가능한 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두 부문을 분리하여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라도 경쟁구도를 도입하였다. 이 같은 경쟁환경의 조성은 수평적으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집중력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나 배타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직적 결합이나 출자를 제한하였다. 본질적으로 자연독점적 특성이 커서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포획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격, 품질 및 공급 조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

하여 독립적 규제기관이 설치되었다.

우리 나라 민영화 사례에서는 경쟁정책적인 관심보다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더욱 크다. 일례로 KT,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및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에 적용되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과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에 대하여 지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특정재벌이 소유하지 않고 국민다수가 소유하게 되면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소유·지배구조와는 무관하게 경쟁적인 산업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독과점력의 횡포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분산되고 경영권의 행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른바 '주인 없는 민영화'에 따른 경영층 및 종업원의 모럴 해저드가 크고 이른바 '낙하산식 인사'로 특징 지워지는 정부의 개입과 경영자율성의 훼손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궁극적으로 민영화의 성패는 민영화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후생의 개선정도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한 경쟁환경의 조성이야말로 성공적인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